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발 의 자: 김근한·양진오 의원(2인)

찬 성 자: 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
김춘남·박세채·소진혁·이명희
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11인)

1. 제안이유

기존 구미시 공공시설 조례 전반에 걸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우대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우대 정비(안 제1조~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4조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외 7개 부서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2조(「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4조(「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5조(「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6조(「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7조(「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생활문

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

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8조(「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성리학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제9조(「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
며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
며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승마장 시설 이용료(제29조 관련)

이용자 구분	이용료(1명 기준)	이용범위	비 고
1일 기승자	성 인 : 20,000원 청소년 : 15,000원 어린이 : 10,000원	실내, 실외마장 이용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자마 회원	월/5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자마 위탁관리	사료·톱밥만 제공 진료비, 장비비 등 별도, 기승시간 제한 없음
월 회원 (자마 미보유회원)	성 인 : 300,000원 청소년 : 250,000원 어린이 : 2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쿠폰제 회원 (10장기준)	성 인 : 180,000원 청소년 : 130,000원 어린이 : 8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마차체험, 승마체험 (1인당)	성 인 : 5,000원 청소년 : 4,000원 어린이 : 3,000원	승마장 주변	

1. 이용시간 : 자마회원을 제외한 기승자는 1일 1시간 이내로 기승시간을 정한다.
2. 월 회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4. 단체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 가. 1일 기승 및 마차 체험 이용료를 50% 할인
 - 나. 월회원(단체강습 포함)은 40% 할인
5.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 1명 포함),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는 50%, 어린이를 동반 기승한 직계가족에게는 20%를 할인 할 수 있다.
6.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게 한한다)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1일 기승 이용료의 50% 감면
 - 나. 마차체험 이용료의 50% 감면
 - 다. 승마체험 이용료의 50% 감면

■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관람료(제6조 관련)

□ 성리학전시관

구 분		입장료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일 반 (구미시민)	19세 이상 64세 이하	1,000 (500)	700 (400)	
청소년, 군인 (구미시민)	·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등)	500 (300)	400 (200)	
1)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17) 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무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④ (생략)</p>	<p>제6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예우대상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제3조(「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이용료 등)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4조(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생략) <u><신설></u></p> <p>6. (생략) ③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 6.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

□ 제4조(「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 <u><신설></u></p> <p>7. (생략)</p>	<p>제9조(연회비 면제) ----- ----- ----- -----.</p> <p>1. ~ 6. (현행과 같음) 7.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8. (현행 제7호와 같음)</p>

□ 제5조(「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14.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사용료 감면) ①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p> <p>15. (현행 제1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제6조(「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p>

<p>14. (생략) ② (생략)</p>	<p><u>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u>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 제7조(「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p>	<p>제8조(수강료의 면제)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u>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u> 10. (현행 제9호와 같음)</p>

□ 제9조(「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p>	<p>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 ----- -----</p>

구미시추모공원(이하 “추모공
원”이라 한다)과 유택동산 사용
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조
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해당하며 사망일 현재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
우대상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해당하며 사망일 현재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
우대상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안전재난과

조 례 명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우대 신설
- 노인복지시설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구미시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 선산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구미과학관 관람료 전액 감면
- 구미생활문화센터 수강료 및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람료 면제
- 구미시추모공원 병역명문가 본인에 한하여 전액 면제
- 구미시공설승조당 병역명문가 본인에 한하여 50% 감면

검토 결과

- 최근 구미시 명문가 증가 추이를 볼 때, 예우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감면·우대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함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는 영향이 없거나 경미할 것으로 보임
- 감면에 따른 이용료 등 세입은 감소할 것이나, 시설 이용 수요의 증가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윤원배(☎054-480-6747)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병역명문가 예우 등)
 -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등)

□ 주요 사항

-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등)의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 검토 결과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부여는 국가에 헌신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제6조(사용료 등)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가문에 대한 예우 강화로 사회적 존중문화 확산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도 현행 노인복지시설은 사용료 등 징수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별도 규정(「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축산과

조 례 명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관련 규정 : 제29조(이용료 및 이용범위))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승마장 시설 이용료 50% 감면 규정 신설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시의 병역명문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승마장 이용료 감면 등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병역명문가 감면 제도 검토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예우 수준 제고 및 제도 간 형평성 강화○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아이돌봄과

조 례 명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이용료 등)

□ 주요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항제1호 ~ 제5호: 현행과 같음
 - 제6호: (신설)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제7호: 현행 제6호와 같음

□ 검토 결과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존중과 대상 가문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및 사용료 등 감면은 타당하다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존중과 병역명문가 가문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아이돌봄과

조 례 명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연회비 면제)

□ 주요 사항

-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호 ~ 제6호: 현행과 같음
 - 제7호: (신설)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제8호: 현행 제7호와 같음

□ 검토 결과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존중과 대상 가문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이용 연회비 감면은 타당하다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존중과 병역명문가 가문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조 례 명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병역법」 제8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4조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 신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 검토 결과

- 청소년수련시설은 주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인 성인의 이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관련 예우 적용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인식 제고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신산업정책과

조 례 명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과학관 내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 관람료 전액 감면 규정 신설

□ 검토 결과

- 병역명문가 관람료 면제 조항 추가는 타 법령 및 유사 조례의 사례와 부합하며, 조례 목적(사회공헌자 예우 강화)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 및 시민 인식 제고
 - 과학관 이용 기회 균등화 및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 제고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의 면제)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미생활문화센터 수강료 전액 면제 규정 신설

검토 결과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수강료 면제 적용 가능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시설 수강료 면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센터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낭만관광과

조 례 명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성리학전시관 무료 관람 규정 신설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 검토 결과

- 조례 개정에 동의함
- 현행과 동일하게 무료 운영 체계를 유지하므로,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에 따라 운영상 변화나 재정적 영향은 없으며 별도의 행정·재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조례 문안 일원화를 통한 조문 정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사항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 구미시추모공원 사용료 면제
 - 구미시공설승조당 사용료 50% 감면

□ 검토 결과

-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귀감과 명예심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함
 -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병역명문가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민 관심도 증가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구미시공설승조당 통합관리시스템 감면 대상자 추가 개선 용역 비용과 시일 소요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용역비): 총 10,000천원 (1억원 미만)
 - 구미시공설승조당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용역(감면 대상자 추가 개선)
 - ※ 구미시 병역명문가 대표자 148명 (2025. 9. 22. 기준)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김시훈 (☎054-480-5164)